이 사 회 규 정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임 무)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한다. 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
2.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 방식 검토
3.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

④ 이사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 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 3 장 회 의 소 집 및 진 행

제 6 조 (회의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제 5 조 제 ②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주간전에 각 이사에 대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재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중장기 경영계획 및 연간 경영계획
(3)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4)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7) 공동대표의 결정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아니함.
(11) 삭제 <2022. 12. 20>
(1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3)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4)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제도
(15)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6)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
(17)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8) 본점,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9)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20)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의 보고
(21) 단, 직원의 채용 및 조직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 지분투자 및 신.증설 투자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시설 및 운전자금 차입
(12)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13)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집행임원에 관한 사항

(1) 집행임원의 직위 위촉 및 해촉
(2) 집행임원 관련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 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 14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④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 5.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1. 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3.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11.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12.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 2. 10 부터 시행한다.

단, 상법 제 542 조의 8 제 1 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6. 7. 23 부터 시행한다.